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8 | 2025.01.06 (2024.12.30 ~ 2025.01.0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4.12.30.~2025.01.05)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 3개월분 임금, 5회 이상의 산정기준 및 임금등 체불자로 제공기간을 정하고,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를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는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립하며,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디지털 안전 3법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운영위>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 <법사위>, <교육위>, <과방위> 등에서 법안 심사와 현안 질의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금융위원회) 6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국토교통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9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6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7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19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1
-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1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2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2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2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 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4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6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8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30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AI 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제정 등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 [국제상사중재] 2025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규칙: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3 (2024년 12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7 (2025년 1월 1째주)
- [소송]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 -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 가능 -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 공개 - '25.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2024-12-31
-------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음.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음

<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 >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됨.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임

<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임

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①관련 법령위반, ②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됨.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음.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함.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됨

< 우수기업 평가기준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였음.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음.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음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음

또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음.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예: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약속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함

< 지정 유예효과 >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음.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국토교통부**「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5.1.31)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추진 원칙, 전담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등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 공개

2024-12-30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4.3~)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음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추진 원칙

-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

② 사업시행자

-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
- 또한,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

③ 통합 계정

-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

④ 사업범위 확대

-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

<사업 유형 및 개발 특례>

사업 유형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
개발 특례	-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 허용(*산정시 인공지반 미포함) - 건축물 건축제한: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를 완화 - 기반시설 지원: 시도지사가 지원가능한 기반시설(도로 등) 범위를 폭넓게 규정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임. 이는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제55조제1항)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③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제76조의22)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제5항)

-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제112조의2제4항 신설)

-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⑥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10조제1항)

-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제24조제1항)

-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③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 (제63조)

-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④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제71조의2 신설)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26조제1항제5호)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수시부과 제도 신설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④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4-01 시행 예정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1-02 시행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손해액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차등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종전에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평균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31 시행

특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 매출액 규모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술 및 시설 검사를 폐지**하여 재허가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디지털 방송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31 시행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31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복귀’ 요건 중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동일·유사성에 대한 인정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서 ‘중분류’에 속할 것으로 완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등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개념에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31 시행

해저광물 투자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충당금 적립 등을 포함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과 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조건이나 부담으로 붙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해저조광권자 간 합리적인 수익배분을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던 조광료를 매출액과 투자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해저조광권자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등 조광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31 시행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30. ~2025.02.10.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부여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 3개월분 임금, 5회 이상의 산정기준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을 정하고,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를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직자 지연이자 신설 등 법 개정예 의한 조항 변경 (안 18조)
- ② 명단공개 제외 대상 정비 (안 23조의2)
 - 명단공개 제외 대상의 금품범위를 개정법률의 제43조의2 제1항 명단공개 대상 금품범위와 일치
- ③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 (안 제23조의4)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확대에 따라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
- ④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추가 (안 제23조의5)
- ⑤ 상습체불사업주 적용 기준 (안 제23조의6)
 - 법 제43조의4 제1항 각 호의 3개월분 임금 및 5회의 적용기준 등 산정방법 구체화
- ⑥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안 제23조의7)
- ⑦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구체화 (안 23조의8)
- ⑧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위탁기관의 업무보고 의무 신설 (안 제23조의9)
- ⑨ 고용노동부장관이 월평균보수 등을 제공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정보 구체화 (안 제23조의10)
- ⑩ 출국금지 해제사유 및 해제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 ⑪ 협조 요청 대상 및 정보 구체화 (안 58조의3)
- ⑫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사항 정비 (안 제59조)
- 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확대 등 업무 신설에 따른 민감정보처리 규정 정비 (안 제59조의2)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tel:044-202-7548) (전화: 044-202-7548, 팩스: 044-202-807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12.31.
~2025.02.14.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 추가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분양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양 승인 기준 개선 (안 제8조)

- 산·학·연 수요자들의 수량 증대 요구,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수량 공급여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분양 수량 기준 상향 개선

② 분양승인 관련 서식 개정 (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분양승인신청서, 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정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전화: 044-200-5676, 팩스: 044-870-1791\)](tel:044-200-567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30.
~2025.02.10.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고사용자 의무 면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1조)

-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기존 의무 면제 문구 삭제

② 인용조항 개정 (안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 법률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 문의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tel:02-397-727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12-30 발의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게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024-12-31 발의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4조제1항)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025-01-02 발의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2025-01-03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30 발의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째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4-12-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의무를)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의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아울러 ICT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감면 범위의 확대 및 그에 따라 증가하는 자원 부담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별표 제97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01-02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4-12-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024-12-31 발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 재난·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조문이 3개의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의무 사항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의 우려와 행정 비효율 등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함

이에 **디지털 안전 3법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적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자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 통합,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4-12-31 발의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제1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2024-12-31 발의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은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버티컬 산업과 융합되어 전방위 영역으로 확산,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있음. 따라서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개발 경쟁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2024-12-30 발의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 신고제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4-12-31 발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025-01-02 발의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둌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3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5-01-02 발의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사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12-30 발의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 (안 제33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12-31 발의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치열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종별·직무별 상관없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도 직결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있어서 업무수행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따라서 근로시간의 배분,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2024-12-31 발의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16조 및 제127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2-03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등)

- ①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 (안 제9조제1항제4호)
- ③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 (안 제24조제1항)
- ④ 각 시·도지사 하역금 태풍, 풍랑 등 기상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의1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0인)

2024-12-31 발의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30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12-30 발의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0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4-12-30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2호·제13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12-31 발의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탁·리츠 등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되어, 2025. 2. 7. 시행됨

그러나 주민이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부동산을 확보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만 주주가 된 원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당 또는 정산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2024-12-31 발의

건축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음

건축 관계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발주 될 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증가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12-31 발의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확대·발전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활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등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1/8(수) 10:00	- 현안 질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6(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7(화) 10:00	- 현안 질의
교육위	전체회의	1/7(월) 10:00	- 법률안 의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1/6(월) 09: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6(월) 10:30	- 법안 의결, 현안 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7(화) 07:30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김남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8(수) 10:00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차규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8(수) 10:00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민병덕·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8(수) 14:00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전재수·강유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0(금) 10:30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박용갑·김기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6(월)	「팩트북」 제114호 발간	국회도서관	
	1/8(수)	「금주의 서평」 제711호(2025-2호) 발간		
	12/31(화)	「NABO Focus」 제86호 발간	국회에산정책처	
	1/8(수)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세 미나실
	1/10(금)	‘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의원회관 9간 담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30(월)	「현안, 외국에선?」 제97호	국회도서관	
	1/2(목)	「THE 현안」 제39호(2024-39호)		
	1/2(목)	「금주의 서평」 제710호(2025-1호)		
	12/31(화)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12/31(화)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국내 입법적 시사점’(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2/31(화)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과제’(NARS 입법정책)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4.12.30.~2025.01.0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30(월)	방송통신(TMT)	AI 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0(월)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제정 등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12/31(화)	국제상사중재	2025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규칙: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1/2(목)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3 (2024년 12월)
1/2(목)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3(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7 (2025년 1월 1째주)
1/3(금)	소송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1/3(금)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